

제340회 임시회
운영상황결과보고

(2017. 2. 14 ~ 2. 23)



전라북도의회
(의사담당관실)

제 340회 정례회

(2017. 2. 14 ~ 2. 23)

제340회 임시회 개회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절기상 우수를 앞두고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제340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수와 함께 도민들의 움츠렸던 마음도 서서히 풀리기를
기대합니다.

송하진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도약과 더 나은 삶을 위해 도민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우리
상황은 그리 만만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이여 최근 구제역까지 덮쳐 도내 전역이 초긴장상태입니다. 전라북도 방역당국에서는
생계와 불안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축산농가와 관련 업계를 위해 구제역 긴급방역조
치에 총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폐쇄 결정으로 지역경제에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워
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민들은 오늘 오후 2시 군산에 모여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한
범도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합니다. 현대중공업은 근로자와 가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망각한 채 대기업의 이윤논리를 앞세운 군산조선소 폐쇄방침을 즉각 철회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부는 군산조선소 폐쇄문제가 단순히 전북지역경제의 붕괴에 그치지
않고 국가경제와 정책에도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결코 좌시
해서는 안 되며 해법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요즘 졸업시즌을 맞은 대학가는 심각한 취업난으로 인해 기쁨보다는 한숨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향 전복을 떠난 20대 청년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7천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지사님께서도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해 다각
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북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 실태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공단 등 6개 기관에 지난 3년간
지역인재 채용률은 13.1%로 전체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
북도는 이들 공공기관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독려함으로써 지방대학을 졸업한 뒤에도 고향에서 얼마든지 취업이
가능하다는 모범사례가 만들어지고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신규채용
정원 35%를 지역인재의 몫으로 할애토록 규정한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다음 달이면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입학 또는 진학을 앞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기대감 못지않게 자녀들의 생활이 혹시나 학교폭력으로 얼룩지거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과 염려도 클 것입니다. 교육감님과 교육계 종사자 여러분께서는 모두 내 자식 일이라는 생각으로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다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챙기고 세심하게 배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열악한 의정환경 속에서도 전북도정과 교육행정의 잘못된 정책과 절차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중심에 항상 우리 의원님들이 계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고 험난합니다. 우리 도의회가 제정한 전라북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대법원으로부터 무효판결을 받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도의회는 학생들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전북교육청을 정착시키고자 지난 2013년 10월 의원 발의로 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마저 교원 지위 관련 사항은 국가사무라서 조례의 제정이 안 된다며 대법원이 교육부의 손을 들어 준 것은 중앙집권체제의 높은 현실의 벽에 가로막힌 사례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역량을 모아 법과 제도개선을 요구해 나간다면 반드시 온전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꽃을 아름답게 피워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우리들의 열정과 노력이 위기를 극복하고 전라북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룰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새 희망을 갖고 연초 계획한 일들을 하나하나씩 이루어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2월 13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황 현

목 차

제340회 정례회

I. 집회 및 의사일정

1. 공고 및 집회
2. 회기 및 운영
3. 의 사 일 정

II. 의안접수 및 처리

1. 접 수 현 황
2. 처 리 현 황

III. 민원 접수 및 처리

1. 접 수 현 황
2. 처 리 현 황
3. 위원회별 처리현황
4. 주요 처리사례

IV.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1. 2016년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2. 2016년 위원회별 요구상황
3. 제10대 의회 의원 요구 및 제출현황
4. 제10대 의회 위원회별 요구상황

I . 집회 및 의사일정

1. 공고 및 집회

- 집회 공고 : 2017. 2. 8(수)
- 집회 일자 : 2017. 2. 14(화) 14:00
- 집회 사유
 - 2017년도 실·국·원별 업무보고 청취
 - 상임위원회별 활동

2. 회기 및 운영(제10대)

- 회 기 : 2017. 2. 14 ~ 2. 23(10일간, 2017년 : 1일, 총누계 424일)
- 개의일수
 - 본회의 : 2(연누계 : 4, 총 누계 80)
 - 상임·특별위원

구 분	계	운 영	행정자치	환경복지	농산업 경 제	문화관광 건 설	교 육	특 별
제340회 임시회	23	2	5	4	4	5	3	
2017 년도	29	3	6	5	5	6	4	
총 누 계	727	50	152	102	115	124	135	46

3. 의사일정

○ 본회의

일시	부 의 안 건	비고
2.14(화) 11:00	<p style="text-align: center;">《 제1차 본회의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식 ○ 5분 자유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도영 의원, 이성일 의원, 최영일 의원, 최인정 의원, 허남주 의원, 이학수 의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4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4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삼성 새만금 투자 논란 진상규명 및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2.23(목) 14:00	<p style="text-align: center;">《 제2차 본회의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분 자유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인정 의원, 한완수 의원, 이도영 의원, 김대중 의원, 양용모 의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라북도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2. 전라북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4. 전라북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조례안 5. 전라북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전라북도교육청 초·중등학생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안 7.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가칭’ 만성중학교) 8. 삼성 새만금 투자 논란 진상규명 및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 조사 계획안 승인의 건 9. 제10대 전라북도의회 후반기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 	

○ 상임·특별위원회

위원회	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운영 위원회	2. 14(화) 10: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안전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4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결정의 건 - 전라북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 전라북도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심사의 건 	
	2.15(수) 10: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 	

행정자치 위 원 회	2. 15(수) 14:00	1	○ 2017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질문) -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2. 16(목) 10:00	2	○ 2017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질문) - 대외협력국, 자원봉사센터, 국제교류센터, 인권센터	
	2. 17(금) 10:00	3	○ 2017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질문) 및 의안심사 - 기획조정실 - 전라북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7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질문) - 전북연구원, 공보관	
	2. 20(월) 10:00	4	○ 2017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질문) 및 의안심사 - 자치행정국 - 전라북도 명예도지사 위촉 사전 동의안 ○ 2017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질문) -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감사관	
	2. 22(수) 09:30	5	○ 현지 의정활동 - 서울사무소 세종분소(2016.7.25.개소)	
환경복지 위 원 회	2. 15(수) 14:00	1	○ 2017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남원의료원	
	2. 16(목) 10:00	2	○ 2017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 보건환경연구원, 복지여성보건국	
	2. 17(금) 10:00	3	○ 2017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 새만금추진지원단, 환경녹지국 ○ 의안심사 - 전라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20(월) 10:00	4	○ 현지 의정활동 - 민원 다발지역 현장방문 ○ 2017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 군산의료원	
농산업경제 위 원 회	2. 15(수) 14:00	1	○ 2017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 전북테크노파크,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2. 16(목) 10:00	2	○ 2017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자동차기술원, 전북신용보증재단	

	2. 20(월) 10:0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 경제산업국, 농업축산식품국 	
	2. 21(화) 10:00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농업기술원 	
문화건설 안전위원회	2. 15(수) 10: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 도민안전실 ○ 현지 의정활동 - 전북투어패스 발매 선포식(군산) 	
	2. 16(목) 10: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심사 - 전라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 2017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 건설교통국, 전북개발공사,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2. 17(금) 10:0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심사 - 전라북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17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 문화체육관광국, 전라북도 체육회, 전라북도 장애인체육회 -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2. 20(월) 10:00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 전라북도 문학관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 21(화) 10:00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의정활동 - 2017 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 	
교육 위원회	2. 16(목) 14: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심사 - 전라북도 교육청 초·중등학생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안 -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가칭 “만성중학교”) 	
	2. 17(금) 10: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의정활동 - 2017. 3월 개교학교 점검(하가초, 새연초, 기온초) 	
	2. 20(월) 10:0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의정활동 - 교육부 1인 시위(학교총량제 및 국정교과서 관련) 	

Ⅱ. 의안접수 및 처리

1. 접수현황

○ 접수기관 및 의안별

제340회 (2017. 2. 23기준)

구 분	계	조 례				규칙	규정	승인 동의	일반 의안	예산 결산	건의 결의	기타 의안	
		소계	제정	개정	폐지								
총 계	금 회	11	7	5	2			3				1	
	누 계	986	558	242	316	10	11	1	330		35	109	42
의 회	소계	금회	8	6	5	1			1				1
		누계	514	346	212	134		11	1	7		109	40
	의원	금회	7	6	5	1							1
		누계	450	346	212	134		10		3		97	14
	위원회	금회	1						1				
		누계	44					1	1	4		12	26
	도지사	금 회	2	1		1			1				
		누 계	356	163	26	130	7		173		19		
교육감	금 회	1						1					
	누 계	116	49	4	42	3		50		16		1	

2. 처리현황

○ 총 괄

제340회 (2017. 2. 23기준)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계 류 (미료, 미심사)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대안						
총 계	금회	11	10	8	1		1			1	
	누계	986	962	810	126		15		12	24	
조 례 안	소계	금회	7	7	5	1		1			
		누계	558	536	426	102		3		5	21
	의회	금회	6	6	5	1					
		누계	346	323	261	62				4	18
	도지사	금회	1					1			
		누계	163	160	123	35		2		1	2
교육감	금회										
	누계	49	48	42	5		1			1	
규 칙 안	금회										
	누계	11	10	10					1		
규 정 안	금회										
	누계	1	1	1							
승인동의안	금회	3	2	2						1	
	누계	330	228	209	6		9		4	2	
일 반 의 안	금회										
	누계										
예산결산안	금회										
	누계	35	35	16	17		2		1		
건의결의안	금회										
	누계	109	108	105	1		1		1	1	
기 타 의 안	금회	1	1	1							
	누계	42	42	42							

○ 위 원 회

구 분	회 부										처 리				미 료	미 심 사	
	계	조 례	규 칙	규 정	승 인 동 의	일 반 의 안	예 산 결 산	건 의 결 의	기 타 의 안	계	가 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금회	9	8			1					9	6	1	1		1	
	누계	847	553	11	1	223		21	17	3	823	682	110	16	12	24	
운 영 위 원 회	금회	2	2								2	2					
	누계	51	33	11	1				6		46	42	1	1	2	5	
행 정 자 치 위 원 회	금회	2	1			1					1			1		1	
	누계	167	121			34			2	1	164	141	21	2		3	
환 경 보 지 위 원 회	금회	1	1								1	1					
	누계	120	100			17			3		116	95	18	1	2	4	
산 업 경 제 위 원 회	금회																
	누계	140	68			69			3		135	113	14	7	1	5	
문 화 관 광 건 설 위 원 회	금회	2	2								2	2					
	누계	156	98			54			4		154	120	22		3	2	
교 육 위 원 회	금회	2	1			1					2	1	1				
	누계	175	123			49		1		1	168	143	18	3	4	7	
특 별 위 원 회	금회																
	누계	36						34	1	1	36	18	16				

○ 본 회 의(직접부의)

구 분	부 의									처 리				미 료	미 상 정	
	계	조 례	규 칙	규 정	승 인 동 의	일 반 의 안	예 산 결 산	건 의 결 의	기 타 의 안	계	가 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금회	2			1				1	2	2					
	누계	139	1		7			95	38	139	136	2		1		

○ 본 회 의(의 결)

구 분	부 의									처 리				미 료	미 상 정	
	계	조 례	규 칙	규 정	승 인 동 의	일 반 의 안	예 산 결 산	건 의 결 의	기 타 의 안	계	가 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금회	11	7		3				1	9			1		1	
	누계	986	558		330		35	109	42	975	848	125	14	12	24	

제10대 의안처리 현황

○ 기관 및 의안별<접수>

제340회 (2017. 2. 23기준)

구 분	계	조 례				규칙	규정	승인 동의	일반 의안	예산 결산	건의 결의	기타 의안
		소계	제정	개정	폐지							
총 계	986	558	242	316	10	11	1	330		35	109	42
의 회	소 계	514	346	212	134		11	1	7		109	40
	의 원	450	346	212	134		10		3		97	14
	위 원 회	44					1	1	4		12	26
전라북도지사	356	163	26	130	7			173		19		
전라북도교육감	116	49	4	42	3			50		16		1

○ 의안 및 처리유형별

제340회 (2017. 2. 23기준)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계 류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대안					
총 계	986	962	810	126		15		12	24	
조 례 안	소 계	558	536	426	102		3		5	21
	의 회	346	323	261	62				4	18
	도 지 사	163	160	123	35		2		1	2
	교 육 감	49	48	42	5		1			1
규 칙 안	11	10	10					1		
규 정 안	1	1	1							
승 인 동 의 안	330	228	209	6		9		4	2	
일 반 의 안										
예 산 결 산 안	35	35	16	17		2		1		
건 의 결 의 안	109	108	105	1		1		1		
기 타 의 안	42	42	42							

전라북도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제 출 자	최영규·송지용·정지세·박재완·강용구 이도영·이해숙·정호윤·최영일·허남주		제 출 일 자	2017. 1. 2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운영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2. 8
	의 결 일 자	2017. 2. 1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2. 2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2. 2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라북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지원과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전라북도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의정발전자문위원 역할 등의 정의(안 제2조)
- 나. 의정발전자문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위원 임기 및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 라. 위원의 해촉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의안번호 977

전라북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강용구·최영규·송지용·정진세·박재완 이도영·이해수·정호윤·최영일·허남주	제 출 일 자	2017. 1. 2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운영위원회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2017. 2. 14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2. 23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17. 2. 2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의원이 기소되어 구금 중인 경우에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별다른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의원이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

의안번호 978

삼성 새만금 투자 논란 진상규명 및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 출 자	전라북도의회 의장		제 출 일 자	2017. 2. 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직접부의>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2. 14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2. 15		이 송 기 관	전라북도의회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선임의원

(상임위원 가나다순)

교섭단체	소속위원회	의 원 명	비 고
계		9명	
더불어 민주당	행정자치위원회	정 호 영	
	환경복지위원회	국주영은	
	환경복지위원회	이 호 근	
	농산업경제위원회	박 재 만	대표발의
	교육위원회	양 용 모	
	교육위원회	이 해 속	
	교육위원회	조 병 서	
국민의당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장 학 수	
	교육위원회	최 인 정	

전라북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조례안

제 출 자	양성빈 의원 외 8인		제 출 일 자	2017. 2. 6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2. 8
	의 결 일 자	2017. 2. 1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2. 2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2. 2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극심한 빈부격차 등으로 인해 사회적 소외계층이 발생함에 따라 각종 범죄발생을 또한 늘어나고 있어 경찰력을 기반으로 한 범죄예방활동과 더불어 건축물, 골목길, 공원 등 생활환경 전반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설계에 대한 요구가 높음.
- 이에 각종 공공시설물, 공공건축물은 물론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도시계획사업 전반에 걸쳐 범죄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환경설계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범죄예방 환경설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함(안 제5조)
- 나. 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안 제7조)
- 다.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추진 기관 및 단체에 기술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8조)
- 라. 범죄예방 환경설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교육과 홍보,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안 제11조)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가칭’ 만성중학교)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17. 2. 6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2. 8
	의 결 일 자	2017. 2. 1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2. 2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2. 24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전주만성도시개발지구 내 대규모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건설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 전주시 만성동에 ‘가칭’ 만성중학교를 설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라북도립학교 설립

(단위 : 학급, 명, m², 천원)

지역	학교명	학급수		학생수	설립예정지	개교 예정일	소요 예산액	비고
		일반	특수					
전주	만성중	24	1	714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962-1	2020.3.1	21,591,078	

전라북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정호영·최은희·이해숙 의원 외 8인		제 출 일 자	2017. 2. 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2. 8
	의 결 일 자	2017. 2. 1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2. 2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2. 2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거리예술(Busking)은 자유로운 표현력과 강한 실험정신, 그리고 관객 친화적인 현장성으로 인하여, 다른 응용예술이나 문화산업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함. 또한 예술가들과 도민들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효과가 크고, 실험적·대안적 시민문화의 육성과 문화산업의 저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특히 거리예술활동을 지역의 전통시장 및 상가, 공원,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등과 결합하여 창업 및 상가활성화는 물론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의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문화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다양성이 반영된 작품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거리예술 활동을 보장하고, 도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문화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가. “거리예술”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전라북도지사는 다양성이 반영된 거리예술이 지속가능성을 갖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전라북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라.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일상적인 지원,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 거리예술 특화지구 지정,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등’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거리예술진흥 재원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전라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정호영·정호윤 의원 외 7인		제 출 일 자	2017. 2. 6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환경복지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2. 8
	의 결 일 자	2017. 2. 1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2. 2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2. 2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이 조례는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자원의 순환성 강화를 위하여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가. “순환골재 등”, “품질인증”, “발주자”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본청·직속기관 및 출장소, 사업소, 공기업, 도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등 순환골재 사용하는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재활용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 마. 순환골재 등의 용도를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정함(안 제6조)

전라북도교육청 초·중등학생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최영규·최인정 의원 외 7인		제 출 일 자	2017. 2. 6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2. 8
	의 결 일 자	2017. 2. 16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2. 23	심 의 결 과	수정가결
이 송 일 자	2017. 2. 24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전라북도 관내 학생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상안전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교육감은 학생 수상안전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상 안전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 나. 교육감은 해마다 도내 수영장 시설 구축 실태 및 단위학교의 수상안전교육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야 함(안 제5조)
- 다. 교육감은 수상안전교육을 위한 교육장소 확보 노력 및 수영장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시·군 등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안 제7조)
- 라. 교육감은 수상안전교육에 따른 수영장 내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교사가 교육현장에 학생과 함께 하면서 직접 지도 하도록 하고, 생존수영교육 대상자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야 함(안 제8조 및 제9조)
- 마. 교육감은 학생 수상안전교육에 드는 예산 확보를 위하여 전라북도지사, 시장·군수와 협력체계를 구축(안 제10조)

**전라북도교육청 초·중등학생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 수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7조(수상안전교육 시설 확보)</p> <p>① 교육감은 수상안전교육을 위한 교육 장소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교육감은 도내 수상안전교육 장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지사, 시장·군수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p> <p>③ < 신설 ></p>	<p>제7조(수상안전교육 시설 확보)</p> <p>① ----- ----- -----</p> <p>② ----- ----- ----- -----</p> <p>③ 교육감은 수상안전교육을 위한 교육 장소가 부족할 경우 위탁 운영할 수 있다.</p>

삼성 새만금 투자 논란 진상규명 및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 승인안

제 출 자	삼성 새만금 투자 논란 진상규명 및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		제 출 일 자	2017. 2. 17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직접부의>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2. 2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2. 24		이 송 기 관	전라북도의회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구성개요

- 명 칭 : 삼성 새만금 투자 논란 진상규명 및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
- 위원수 : 9명
- 활동기간 : 2017. 2. 14 ~ 8. 13

나. 활동대상기관 및 분야

- 활동기관 : 전라북도, 새만금사업 투자 및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관련 관계기관
- 대상분야 : 2011년 4월 체결한 삼성 새만금 투자협약 및 새만금사업 착공 후 새만금 관련 투자협약 등

다. 중점 활동사항

-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 체결 관련 자료 확보
- 투자 협약 당사자 증인 출석 및 청문
- 새만금 투자 협약 관련 기관 방문 활동
- 새만금 관련 MOU 현황 파악 및 투자현황, 협약파기 현황 등
- 새만금 관련 MOU 체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모색

Ⅲ. 민원 접수 및 처리

1. 접수현황

○ 분야별

(2017. 2. 14 ~ 2017. 2. 23)

구분	계	행정	교육	사회	보건	환경	산업 경제	체육 관광	농축 수산	교 통	도시 계획	건 설	건 축	기 타
금 회	3							1		1	1			
2017년 누 계	4							1	1	1	1			

○ 제출자별

구분	계	인 원 별					기관단체
		소 계	1인	2인~9인	10인~99인	100인 이상	
금 회	3	3	2		1		
2017년 누 계	4	4	2		2		

2. 처리현황

구분	계	처 리 별					처리중
		소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금 회	3	3	3				
2017년 누 계	4	4	4				

3. 위원회별 처리현황(제10대)

(2014. 7. 1 ~ 2017. 2. 23)

구분	위원회별	접수	처리상황				비고
			계	처리	계류	반려	
전회 까지	소 계	70	70	70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7	7	7			
	환경복지위원회	18	18	18			
	산업경제위원회	9	9	9			
	문화관광건설위원회	23	23	23			
	교육위원회	7	7	7			
	기 타	6	6	6			
금회	소 계	3	3	3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3	3	3			
	교육위원회						
	기 타						
누계	소 계	73	73	73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7	7	7			
	환경복지위원회	18	18	18			
	산업경제위원회	9	9	9			
	문화관광건설위원회	26	26	26			
	교육위원회	7	7	7			
	기 타	6	6	6			

IV.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1. 2017년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횟수별)

(2017. 2. 14 ~ 2017. 2. 23)

기관별		구 분	요 구	제 출	미제출	비 율(%)	비 고
계	금 회		25	25		100	
	누 계		37	37		100	
도	금 회		22	22		100	
	누 계		33	33		100	
교육청	금 회		3	3		100	
	누 계		4	4		100	

2. 2017년 위원회별 요구상황(횟수별)

(2017. 2. 14 ~ 2017. 2. 23)

기관별		구 분	계	운 영	행 정 자 치	환 경 복지	산 업 경 제	문화관 광 건 설	교 육	특 별
계	금 회		25	0	1	6	4	9	5	0
	누 계		37	0	4	7	5	12	9	0
도	금 회		22	0	0	6	4	9	3	0
	누 계		33	0	3	7	5	12	6	0
교육청	금 회		3	0	1	0	0	0	2	0
	누 계		4	0	1	0	0	0	3	0

3. 제10대 의회 의원 요구 및 제출현황(횡수별)

(2014. 7. 1 ~ 2017. 2. 23)

구 분	요 구	제 출	미제출	비 고
합 계	1811	1811		
전라북도	1377	1377		
교 육 청	434	434		

4. 제10대 의회 위원회별 요구상황(횡수별)

(2014. 7. 1 ~ 2017. 2. 23)

구 분	계	운 영	행정자치	환경복지	산업경제	문화관광 건설	교 육	특 별
합 계	1811	439	254	200	320	563	22	13
전라북도	1377	402	234	189	298	238	11	5
교 육 청	434	37	20	11	22	325	11	8

5. 제10대 의회 위원회별 요구상황(건수별)

(2014. 7. 1 ~ 2017. 2. 23)

구 분	계	운 영	행정자치	환경복지	산업경제	문화관광 건설	교 육	특 별
합 계	6120	1772	625	826	891	1636	207	163
전라북도	5042	1678	580	792	813	1011	104	64
교 육 청	1078	94	45	34	78	625	103	99